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12,217,095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, 5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